

『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3월 28일

나. 발 의 자 : 김수민, 김상조, 김영호, 김익수,
김춘남, 박세진, 손홍섭, 윤영철,
이명희, 정하영, 황경환 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4월 4일
제1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수 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거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해 장애인
휠체어 수리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,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
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
다. 주요내용

- 장애인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전동기기의 이용촉진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-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
- 수리센터의 불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수리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
- 지정 수리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라. 참고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32조, 제6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 기여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 운영과

- 전동기기 이용 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설치·운영토록 하였음
- 또한,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,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토록 기준을 정하였으며
-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의 불법·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 및 감독토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와 휠체어 수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이동권보장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